

5

대 만

□ 주요 품목별 통관/검역 내용

○ 사 과

- 한국 사과를 [한국산 신선 과일 수입 검역조건]에 근거하여 수입 절차를 밟는다. 한국 정부의 식물 검역기관에서 발급한 식물 검역 증명서를 함께 제출하여 수입하는 이 사과가 검역결과 복숭아 나방(carposina sasakii)의 알에 감염되지 않았으며 수출 전에 이미 적당한 검역 절차를 거쳤다는 증명이 있어야 한다. 그리고 매번 수입한 과일의 검역 날짜와 포장공장의 명칭이나 번호를 반드시 기재해야 한다. 만약 식물검역 증명서나 증명서에 검역조건의 규정에 부합되지 않는다면 이 과일은 수입할 수 없다.
- 한국에서 수입한 사과의 포장상자에 과일의 명칭, 포장 공장 명 혹은 번호 및 [To Taiwan]이라는 글씨가 표시되어 있어야 한다. 포장상자에 통기 구멍이 있다면 구멍 크기가 1.6mm인 그물로 덮어야 하며 혹은 밀폐식 도구로 운반하여야 한다.
- 수출국 식물 검역기관의 검역 합격 통과 후 14일 내에 선적이 안되어 수출이 지연된 신선 과일은 반드시 다시 검사를 거쳐 새롭게 수출 식물의 검역증명서를 발급 받아야 대만으로 수출을 할 수 있다.
- 수출국 검역 사정 개변 및 검역 조건이 변경되면 본 검역 조건은 무효이다.
- 수입을 신청하는 화물이 관제 수입품 이면 먼저 관련 심사 기관의 동의를 거쳐 수입을 해야 한다. (98.09.22 갱신)

○ 수 박

- 한국에서 수박을 수입 할 때 흙이 묻어 있으면 안되며 한국정부의 식물 검역 기관에서 발급한 식물 검역 증명서를 제출해야 하며 수출 전 검역을 거쳐 서방 꽃 (삼주벌레)에 감염되지 않았거나 혹은 수출 전 적당한 검역 처리를 했는지 주석하여 밝혀야 한다. 식물 검역 증명서를 제시하지 않으면 수입할 수 없으며 화물은 되돌려 보내거나 소각해야 한다.
- 신선한 수박을 운송할 때 홍콩, 마카오, 싱가포르 등 신선 과실에서 특징의

병충해가 발생했던 국가에서 하역 하거나 중계 운송하여 수입 할 때 BL (Bill of Lading ; Delivery order) 을 제출하여 확인 받은 다음 [식물 및 식물제품 운송도중 특정 역병충해의 전염병 지역을 경유하여 수입하는 검역작업 방법]에 근거하여 처리하며 수출 전 다음과 같은 방식의 포장에 대하여 검역 전에는 반드시 완전한 포장 상태를 유지해야 한다.

- 완전 밀폐식 포장
- 밀봉된 포장 상자를 포장할 때 포장 상자에 통기 구멍이 있으면 통기 구멍 위에 1.6mm보다 작은 구멍의 방충망을 덮어야 한다.
- 나무 상자로 포장하여 운반할 때 구멍이 1.6mm보다 작은 방충망이나 완전히 해충의 침입이 불가능한 재료로 화물상자를 육면으로 밀폐하여야 한다.
- 밀폐식 화물상자로 운반
- 밀폐식 포장상자나 나무 상자로 운반 할 경우 밀봉한 부분이나 뜯는 곳에 수출국 식물검역기관의 봉인용지, 봉식을 붙여야 하며 운송도중에는 뜯거나 열어봐서는 안 된다. 수출국 식물 검역 기관에서 전용 봉인 용지, 봉식지를 사용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발급한 식물 검역 증명서에서 봉인 작업에 사용 되었던 봉인용지, 봉인양식 일련번호를 주석하여 밝혀야 한다. 혹은 이 봉인 용지나 봉식의 봉인 작업이 수출 전에 완성되었음을 수출 전에 밝혀야 한다.
- 상술한 내용은 밀폐식 화물 상자로 식물이나 식물제품을 운송하여 수입하는 경우이다. 반드시 수출 식물의 검역 증명서나 선하증권(BL) 이나 기타 식물 검역기관에서 심사 허가를 한 서류에 화물상자 번호 및 봉인 번호가 주석되어 있어야 한다. 화물이 수입 된 다음 검역 요원이 봉인을 뜯기 전에 수입자나 기타 대리인이 임의로 봉인용지를 뜯거나 화물 상자를 열어서는 안 된다.
- 수입 시 만약 목재 포장재료로 적재, 포장, 기초 지탱 하는 것과 화물 고정을 할 경우 이 목재의 포장재료는 반드시 [수입 화물에 사용한 목재포장 재료 검역조건]에 근거하여 수출 전에 브롬화 메탄으로 훈증하거나 열처리를 하여 규정에 맞는 도장을 찍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규정에 따라 검역 처리를 하거나 소각 혹은 되돌려 보내는 처리를 한다.
- 수출국의 전염병 발생 상황이 달라지거나 검역조건이 변경되면 본 검역조건

은 무효이다.

- 수입을 신청한 화물이 수입 통제 제품이면 우선 먼저 심사 기관의 동의를 거쳐 수입을 해야 한다.

○ 참 외

- 한국에서 신선한 참외를 수입할 때 흠이 묻으면 안 되고 이외에 한국정부의 검역 기관에서 발급한 식물 검역 증서를 동봉하여야 한다. 그 중 참외는 수출 전의 검역에서 서방 꽃 삽주벌레(western flower ehrips; Franklimella occidenealis)에 감염되지 않았거나 수출 전에 적당한 검역 처리를 거쳤음을 주석하여 밝혀야 한다. 줄기나 잎이 붙어있는 것이면 진딧물(stem nematode, dity lenchus dipsaci)에 감염되지 않았음을 밝혀야 한다. 식물 검역증서를 동봉하지 않으면 수입을 할 수가 없으며 되돌려 보내거나 소각해야 한다.
- 신선한 과일(참외)은 홍콩, 마카오, 싱가포르 등의 국가에 운송할 때 신선한 과일의 특정 병충해 발생국가나 지역에서 하역 혹은 중개 운수를 할 경우 수입 시 크고 작은 선하증권을 (Bill of Lading; Delivery order) 제출해야 하는 동시에 [식물이나 식물제품 운송 도중에 특정 병충해 지역을 경유하여 수입 하는 검역 작업 방법]에 따라 처리하며 수출 전에 다음과 같은 포장 방식의 하나로 포장을 해야 하며 검역 전에는 완전한 포장 상태를 그대로 유지해야 한다.
 - 완전 밀폐식 포장
 - 밀봉된 포장 상자를 포장할 때 포장 상자에 통기 구멍이 있으면 통기 구멍 위에 1.6mm보다 작은 구멍의 방충망을 덮어야 한다.
 - 나무 상자로 포장하여 운반할 때 구멍이 1.6mm보다 작은 방충망이나 완전히 해충의 침입이 불가능한 재료로 화물상자를 육면으로 밀폐하여 야 한다.
 - 밀폐식 화물상자로 운반
 - 밀폐식 포장상자나 나무 상자로 운반 할 경우 밀봉한 부분이나 뜯는 곳에 수출국 식물검역기관의 봉인용지, 봉식을 붙여야 하며 운송도중에는 뜯거나 열어봐서는 안 된다. 수출국 식물 검역 기관에서 전용 봉인 용지, 봉식 지를 사용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발급한 식물 검역 증명서에서 봉연 작업에

사용 되었던 봉인용지, 봉인양식 일련번호를 주석하여 밝혀야 한다. 혹은 이 봉인 용지나 봉식의 봉인 작업이 수출 전에 완성되었음을 수출 전에 밝혀야 한다.

- 상술한 내용은 밀폐식 화물 상자로 식물이나 식물제품을 운송하여 수입하는 경우이다. 반드시 수출 식물의 검역 증명서나 선하증권(BL) 이나 기타 식물검역기관에서 심사 허가를 한 서류에 화물상자 번호 및 봉인 번호가 주석되어 있어야 한다. 화물이 수입 된 다음 검역 요원이 봉인을 뜯기 전에 수입자나 기타 대리인이 임의로 봉인용지를 뜯거나 화물 상자를 열어서는 안 된다.
- 수입 시 만약 목재 포장재료로 적재, 포장, 기초 지탱하는 것과 화물 고정을 할 경우 이 목재의 포장재료는 반드시 [수입 화물에 사용한 목재포장 재료 검역조건] 에 근거하여 수출 전에 브롬화 메탄으로 훈증하거나 열처리를 하여 규정에 맞는 도장을 찍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규정에 따라 검역 처리를 하거나 소각 혹은 되돌려 보내는 처리를 한다.
- 수출국의 전염병 발생 상황이 달라지거나 검역조건이 변경되면 본 검역조건은 무효이다.
- 수입을 신청한 화물이 수입 통제 제품이면 우선 먼저 심사 기관의 동의를 거쳐 수입을 해야 한다.

○ 감

- 한국에서 신선감을 수입할 때 한국 정부의 검역 기관에서 발급한 식물 검역 증서를 동봉해야 하며 검역을 거쳐 서방 꽃 삽주벌레 (*Western flower thrips Frankliniella occidentalis*)에 감염되지 않았으며 혹은 수출 전에 이미 적당한 검역처리 했음을 주석하여 밝혀야 한다. 식물 검역 증명서를 동봉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수입할 수 없으며 되돌려 보내거나 소각해야 한다.
- 감은 홍콩, 마카오, 싱가포르 등의 국가에 운송할 때 신선한 과일의 특정 병충해 발생국가나 지역에서 하역 혹은 중개 운수를 할 경우 수입 시 크고 작은 선하증권을 (Bill of Lading; Delivery order) 제출해야 하는 동시에 [식물이나 식물제품 운송 도중에 특정 병충해 지역을 경유하여 수입하는 검역 작업 방법]에 따라 처리하며 수출 전에 다음과 같은 포장 방식의 하나로 포장을 해야

하며 검역 전에는 완전한 포장 상태를 그대로 유지해야 한다.

- 완전 밀폐식 포장
- 밀봉된 포장 상자를 포장할 때 포장 상자에 통기 구멍이 있으면 통기 구멍 위에 1.6mm보다 작은 구멍의 방충망을 덮어야 한다.
- 나무 상자로 포장하여 운반할 때 구멍이 1.6mm보다 작은 방충망이나 완전히 해충의 침입이 불가능한 재료로 화물상자를 밀폐하여야 한다.
- 밀폐식 화물상자로 운반.
- 밀폐식 포장상자나 나무 상자로 운반 할 경우 밀봉한 부분이나 뜯는 곳에 수출국 식물검역기관의 봉인용지, 봉식을 붙여야 하며 운송도중에는 뜯거나 열어봐서는 안 된다. 수출국 식물 검역 기관에서 전용 봉인 용지, 봉식지를 사용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발급한 식물 검역 증명서에서 봉연 작업에 사용 되었던 봉인용지, 봉인양식 일련번호를 주석하여 밝혀야 한다. 혹은 이 봉인 용지나 봉식의 봉인 작업이 수출 전에 완성되었음을 수출 전에 밝혀야 한다.
- 상술한 내용은 밀폐식 화물 상자로 식물이나 식물제품을 운송하여 수입하는 경우이다. 반드시 수출 식물의 검역 증명서나 선하증권(BL) 이나 기타 식물검역기관에서 심사 허가를 한 서류에 화물상자 번호 및 봉인 번호가 주석되어 있어야 한다. 화물이 수입 된 다음 검역 요원이 봉인을 뜯기 전에 수입자나 기타 대리인이 임의로 봉인용지를 뜯거나 화물 상자를 열어서는 안 된다.
- 수입 시 만약 목재 포장재료로 적재, 포장, 기초 지탱 하는 것과 화물 고정을 할 경우 이 목재의 포장재료는 반드시 [수입 화물에 사용한 목재포장 재료 검역조건] 에 근거하여 수출 전에 브롬화 메탄으로 훈증하거나 열처리를 하여 규정에 맞는 도장을 찍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규정에 따라 검역 처리를 하거나 소각 혹은 되돌려 보내는 처리를 한다.
- 수출국의 전염병 발생 상황이 달라지거나 검역조건이 변경되면 본 검역조건은 무효이다.
- 수입을 신청한 화물이 수입 통제 제품이면 우선 먼저 심사 기관의 동의를 거쳐 수입을 할 수 있다.

○ 복 숭 아

- 한국의 복숭아 (신선한 과실)는 "한국산 복숭아 애벌레 나방이 신선한 과실에 붙어 있을 경우 수입하는 검역조건" 에 근거하여 수입을 해야 한다.
- 한국정부의 검역기관에서 발급한 식물 검역 증명서를 동봉하여야 하며 이 신선한 과실에 복숭아 나방 (*Carposina sasakii*) 및 서방 꽃 삽주벌레 (*Frankliniella occidentalis*) 에 감염 되지 않았는지 혹은 수출 전에 적당한 검역처리를 했는지 주석하여 밝혀야 한다. 만약 식물 검역증서를 동봉하지 않았거나 증명서에 주석하여 밝힌 사항이 본 검역조건의 규정에 부합되지 않는다면 생 과일 복숭아는 수입할 수 없다.
- 한국에서 수입된 복숭아 생 과실의 포장상자에 생 과실의 명칭, 포장공장 명 혹은 약호(부호) 및 [TO TAIWAN] 이라는 글자 모양이 있어야 한다.
- 수출국 식물검역기관에서 검역 허가 후 14일 후에도 여전히 수출 되지 않은 복숭아 생 과실은 출하 전에 반드시 다시 검사해야 하며 식물 검역 증명서를 다시 발급 받아야 한다.
- 복숭아를 운송하는 도중 만약 홍콩, 마카오, 싱가포르 등의 국가에 운송할 때 신선한 과일의 특정 병충해 발생국가나 지역에서 하역 혹은 중개 운수를 할 경우 수입 시 크고 작은 선하증권을 (Bill of Lading; Delivery order) 제출해야 하는 동시에 [식물이나 식물제품 운송 도중에 특정 병충해 지역을 경유하여 수입하는 검역 작업 방법]에 따라 처리하며 수출 전에 다음과 같은 포장 방식의 하나로 포장을 해야 하며 검역 전에는 완전한 포장 상태를 그대로 유지해야 한다.
 - 완전 밀폐식 포장
 - 밀봉된 포장 상자를 포장할 때 포장 상자에 통기 구멍이 있으면 통기 구멍 위에 1.6mm보다 작은 구멍의 방충망을 덮어야 한다.
 - 나무 상자로 포장하여 운반할 때 구멍이 1.6mm보다 작은 방충망이나 완전히 해충의 침입이 불가능한 재료로 화물상자를 육면으로 밀폐하여야 한다.
 - 밀폐식 화물상자로 운반.
 - 밀폐식 포장상자나 나무 상자로 운반 할 경우 밀봉한 부분이나 뜯는 곳에 수출국 식물검역기관의 봉인용지, 봉식을 붙여야 하며 운송도중에는 뜯거

나 열어봐서는 안 된다. 수출국 식물 검역 기관에서 전용 봉인 용지, 봉식지를 사용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발급한 식물 검역 증명서에서 봉인 작업에 사용되었던 봉인용지, 봉인양식 일련번호를 주석하여 밝혀야 한다. 혹은 이 봉인 용지나 봉식의 봉인 작업이 수출 전에 완성되었음을 수출 전에 밝혀야 한다.

- 상술한 내용은 밀폐식 화물 상자로 식물이나 식물제품을 운송하여 수입하는 경우이다. 반드시 수출 식물의 검역 증명서나 선하증권(BL) 이나 기타 식물검역기관에서 심사 허가를 한 서류에 화물상자 번호 및 봉인 번호가 주석되어 있어야 한다. 화물이 수입 된 다음 검역 요원이 봉인을 뜯기 전에 수입자나 기타 대리인이 임의로 봉인용지를 뜯거나 화물 상자를 열어서는 안 된다.
- 수입 시 만약 목재 포장재료로 적재. 포장. 기초 지탱 하는 것과 화물 고정을 할 경우 이 목재의 포장재료는 반드시 [수입 화물에 사용한 목재포장 재료 검역조건] 에 근거하여 수출 전에 브롬화 메탄으로 훈증하거나 열4 처리를 하여 규정에 맞는 도장을 찍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규정에 따라 검역 처리를 하거나 소각 혹은 되돌려 보내는 처리를 한다.
- 수출국의 전염병 상황이 바뀌거나 검역 조건이 바뀌면 본 검역조건은 무효이다.
- 수입을 신청하는 화물이 수입 통제 제품이면 우선 먼저 관련기관의 심사를 거쳐 동의한 후에 수입을 할 수 있다.

○ 딸 기

- 한국에서 신선한 딸기를 수입할 때 흙이 묻으면 안 되고 이외에 한국정부의 검역 기관에서 발급한 식물 검역 증서를 동봉하여야 한다. 그 중 참외는 수출 전의 검역에서 서방 꽃 삽주벌레 (western flower ehrips ; *Frankliniella occidentalis*)에 감염되지 않았거나 수출 전에 적당한 검역 처리를 거쳤음을 주석하여 밝혀야 한다. 줄기나 잎이 붙어있는 것이면 진딧물(*stem nematode, dity lenchus dipsaci*) 에 감염되지 않았음을 주석하여 밝혀야 한다. 식물 검역증서를 동봉하지 않으면 수입을 할 수가 없으며 되돌려 보내거나 소각해야 한다.
- 신선한 과실(딸기)은 홍콩, 마카오, 싱가포르 등의 국가에 운송할 때 신선한

과일의 특정 병충해 발생국가나 지역에서 하역 혹은 중개 운수를 할 경우 수입 시 크고 작은 선하증권을 (Bill of Lading; Delivery order) 제출해야 하는 동시에 [식물이나 식물제품 운송 도중에 특정 병충해 지역을 경유하여 수입하는 검역 작업 방법]에 따라 처리하며 수출 전에 다음과 같은 포장 방식의 하나로 포장을 해야 하며 검역 전에는 완전한 포장 상태를 그대로 유지해야 한다.

- 완전 밀폐식 포장
- 밀봉된 포장 상자를 포장할 때 포장 상자에 통기 구멍이 있으면 통기 구멍 위에 1.6mm보다 작은 구멍의 방충망을 덮어야 한다.
- 나무 상자로 포장하여 운반할 때 구멍이 1.6mm보다 작은 방충망이나 완전히 해충의 침입이 불가능한 재료로 화물상자를 육면으로 밀폐하여야 한다.
- 밀폐식 화물상자로 운반
- 밀폐식 포장상자나 나무 상자로 운반 할 경우 밀봉한 부분이나 뜯는 곳에 수출국 식물검역기관의 봉인용지, 봉식을 붙여야 하며 운송도중에는 뜯거나 열어봐서는 안 된다. 수출국 식물 검역 기관에서 전용 봉인 용지, 봉식지를 사용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발급한 식물 검역 증명서에서 봉인 작업에 사용 되었던 봉인용지, 봉인양식 일련번호를 주석하여 밝혀야 한다. 혹은 이 봉인 용지나 봉식의 봉인 작업이 수출 전에 완성되었음을 수출 전에 밝혀야 한다.
- 상술한 내용은 밀폐식 화물 상자로 식물이나 식물제품을 운송하여 수입하는 경우이다. 반드시 수출 식물의 검역 증명서나 선하증권(BL) 이나 기타 식물검역기관에서 심사 허가를 한 서류에 화물상자 번호 및 봉인 번호가 주석되어 있어야 한다. 화물이 수입 된 다음 검역 요원이 봉인을 뜯기 전에 수입자나 기타 대리인이 임의로 봉인용지를 뜯거나 화물 상자를 열어서는 안 된다.
- 수입 시 만약 목재 포장재료로 적재, 포장, 기초 지탱 하는 것과 화물 고정을 할 경우 이 목재의 포장재료는 반드시 [수입 화물에 사용한 목재포장 재료 검역조건] 에 근거하여 수출 전에 브롬화 메탄으로 훈증하거나 열처리를 하여 규정에 맞는 도장을 찍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규정에 따라 검역 처리를 하거나 소각 혹은 되돌려 보내는 처리를 한다.

- 수출국의 전염병 발생 상황이 달라지거나 검역조건이 변경되면 본 검역조건은 무효이다.
- 수입을 신청한 화물이 수입 통제 제품이면 우선 먼저 심사 기관의 동의를 거쳐 수입을 할 수 있다.

○ 배

- 한국의 신선배를 수입할 때 "한국산 복숭아 애벌레 나방이 신선한 과실에 붙어 있을 경우 수입하는 검역조건"에 근거하여 수입을 해야 한다.
- 한국정부의 검역기관에서 발급한 식물 검역 증명서를 동봉하여야 하며 이 신선한 과실에 복숭아 나방 (*Carposina sasakii*) 및 서방 꽃 삽주벌레 (*Frankiniella occidentalis*)에 감염 되지 않았는지 혹은 수출 전에 적당한 검역처리를 했는지 주석하여 밝혀야 한다. 만약 식물 검역증서를 동봉하지 않았거나 증명서에 주석하여 밝힌 사항이 본 검역조건에 부합되지 않는다면 생 과일 배는 수입할 수 없다.
- 한국에서 수입한 배 생 과일의 포장상자에 생과일의 명칭, 포장 공장명 및 번호와 [TO Taiwan]이라는 글자가 있어야 한다. 포장 상자에 만약 통기 구멍이 있다면 1.6mm보다 작은 구멍의 방충망으로 씌우거나 혹은 밀폐식 도구로 운수해야 한다.
- 수출국 검역기관의 검역 합격 후 14일 후에도 아직 선적하여 수출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반드시 검역을 다시 받거나 수출 식물의 검역 증명서를 가시 발급 받아야만 대만으로 수출할 수 있다.
- 수출국의 전염병 상황이 바뀌거나 검역 조건이 변경되면 본 검역 조건은 무효이다.

○ 토 마 토

- 한국에서 토마토를 수입할 때 때 흙이 묻으면 안 되고 이외에 한국정부의 검역 기관에서 발급한 식물 검역 증서를 동봉하여야 한다. 수출 전의 검역에서 서방 꽃 삼주벌레 (western flower ehrips ; *Frankliniella occidentalis*) 및 감자나방(potato tuber moth; *phthorimaea operculella*)에 감염되지 않았음을 주석하여 밝혀야 한다. 혹은 수출 전에 적당한 검역처리를 거쳤음을 식물 검역 증명서에 주석하여 밝혀야 한다. 그리고 감자역병균 A2 형 (potato late blight A2 mating type; *phytophthora infestans* A2 mating type) 이 발생하지 않았음을 증명해야 한다. 또한 감자 역병균 A2 형 발생지역에서 생산된 것이 아님을 증명해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소각하거나 되돌려 보내야 한다. 줄기나 잎이 붙어있는 경우 진딧물(stem nematode *Ditylenchus dipsaci*)에 감염되지 않았음을 주석하여 밝혀야 한다. 수입 시 식물 검역 증명서를 동봉하지 않았을 경우 수입할 수 없으며 되돌려 보내거나 소각 처리를 한다.
- 토마토를 홍콩, 마카오, 싱가포르 등의 국가에 운송할 때 신선한 과일의 특정 병충해 발생국가나 지역에서 하역 혹은 중개 운수를 할 경우 수입 시 크고 작은 선하증권을 (Bill of Lading; Delivery order) 제출해야 하는 동시에 [식물이나 식물제품 운송 도중에 특정 병충해 지역을 경유하여 수입하는 검역 작업 방법]에 따라 처리하며 수출 전에 다음과 같은 포장 방식의 하나로 포장을 해야 하며 검역 전에는 완전한 포장 상태를 그대로 유지해야 한다.
 - 완전 밀폐식 포장
 - 밀봉된 포장 상자를 포장할 때 포장 상자에 통기 구멍이 있으면 통기 구멍 위에 1.6mm보다 작은 구멍의 방충망을 덮어야 한다.
 - 나무 상자로 포장하여 운반할 때 구멍이 1.6mm보다 작은 방충망이나 완전히 해충의 침입이 불가능한 재료로 화물상자를 육면으로 밀폐하여야 한다.
 - 밀폐식 화물상자로 운반
 - 밀폐식 포장상자나 나무 상자로 운반 할 경우 밀봉한 부분이나 뜯는 곳에 수출국 식물검역기관의 봉인용지, 봉식을 붙여야 하며 운송도중에는 뜯거나 열어봐서는 안 된다. 수출국 식물 검역 기관에서 전용 봉인 용지, 봉식지를 사용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발급한 식물 검역 증명서에서 봉인 작업에 사용 되었던 봉인용지, 봉인양식 일련번호를 주석하여 밝혀야 한다. 혹은

이 봉인 용지나 봉식의 봉인 작업이 수출 전에 완성되었음을 수출 전에 밝혀야 한다.

- 상술한 내용은 밀폐식 화물 상자로 식물이나 식물제품을 운송하여 수입하는 경우이다. 반드시 수출 식물의 검역 증명서나 선하증권(BL) 이나 기타 식물검역기관에서 심사 허가를 한 서류에 화물상자 번호 및 봉인 번호가 주석되어 있어야 한다. 화물이 수입 된 다음 검역 요원이 봉인을 뜯기 전에 수입자나 기타 대리인이 임의로 봉인용지를 뜯거나 화물 상자를 열어서는 안 된다.
- 수입 시 만약 목재 포장재료로 적재, 포장, 기초 지탱 하는 것과 화물 고정을 할 경우 이 목재의 포장재료는 반드시 [수입 화물에 사용한 목재포장 재료 검역조건] 에 근거하여 수출 전에 브롬화 메탄으로 훈증하거나 열처리를 하여 규정에 맞는 도장을 찍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규정에 따라 검역 처리를 하거나 소각 혹은 되돌려 보내는 처리를 한다.
- 수출국의 전염병 발생 상황이 달라지거나 검역조건이 변경되면 본 검역조건은 무효이다.
- 수입을 신청한 화물이 수입 통제 제품이면 우선 먼저 심사 기관의 동의를 거쳐 수입을 할 수 있다.

○ 포 도

- 한국에서 신선한 포도를 수입할 때 흙이 묻으면 안 되고 이외에 한국정부의 검역 기관에서 발급한 식물 검역 증서를 동봉하여야 한다. 수출 전의 검역에서 서방 꽃 삽주벌레 (Western flower ehrips ; Franklimella occidenealis)에 감염되지 않았거나 수출 전에 적당한 검역 처리를 거쳤음을 주석하여 밝혀야 한다. 줄기나 잎이 붙어있는 것이면 진딧물(stem nematode, dity lenchus dipsaci) 에 감염되지 않았음을 주석하여 밝혀야 한다. 식물 검역증서를 동봉하지 않으면 수입을 할 수가 없으며 되돌려 보내거나 소각해야 한다.
- 신선한 과실 포도는 홍콩, 마카오, 싱가포르 등의 국가에 운송할 때 신선한 과일의 특정 병충해 발생국가나 지역에서 하역 혹은 중개 운수를 할 경우 수입 시 크고 작은 선하증권을 (Bill of Lading; Delivery order) 제출해야 하는 동시에 [식물이나 식물제품 운송 도중에 특정 병충해 지역을 경유하여 수입하는

검역 작업 방법]에 따라 처리하며 수출 전에 다음과 같은 포장 방식의 하나로 포장을 해야 하며 검역 전에는 완전한 포장 상태를 그대로 유지해야 한다.

- 완전 밀폐식 포장
- 밀봉된 포장 상자를 포장할 때 포장 상자에 통기 구멍이 있으면 통기 구멍 위에 1.6mm보다 작은 구멍의 방충망을 덮어야 한다.
- 나무 상자로 포장하여 운반할 때 구멍이 1.6mm보다 작은 방충망이나 완전히 해충의 침입이 불가능한 재료로 화물상자를 육면으로 밀폐하여 야 한다.
- 밀폐식 화물상자로 운반
- 밀폐식 포장상자나 나무 상자로 운반 할 경우 밀봉한 부분이나 뜯는 곳에 수출국 식물검역기관의 봉인용지, 봉식을 붙여야 하며 운송도중에는 뜯거나 열어봐서는 안 된다. 수출국 식물 검역 기관에서 전용 봉인 용지, 봉식지를 사용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발급한 식물 검역 증명서에서 봉연 작업에 사용 되었던 봉인용지, 봉인양식 일련번호를 주석하여 밝혀야 한다. 혹은 이 봉인 용지나 봉식의 봉인 작업이 수출 전에 완성되었음을 수출 전에 밝혀야 한다.
- 상술한 내용은 밀폐식 화물 상자로 식물이나 식물제품을 운송하여 수입하는 경우이다. 반드시 수출 식물의 검역 증명서나 선하증권(BL) 이나 기타 식물검역기관에서 심사 허가를 한 서류에 화물상자 번호 및 봉인 번호가 주석되어 있어야 한다. 화물이 수입 된 다음 검역 요원이 봉인을 뜯기 전에 수입자나 기타 대리인이 임의로 봉인용지를 뜯거나 화물 상자를 열어서는 안 된다.
- 수입 시 만약 목재 포장재료로 적재, 포장, 기초 지탱 하는 것과 화물 고정을 할 경우 이 목재의 포장재료는 반드시 [수입 화물에 사용한 목재포장 재료 검역조건]에 근거하여 수출 전에 브롬화 메탄으로 훈증하거나 열처리를 하여 규정에 맞는 도장을 찍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규정에 따라 검역 처리를 하거나 소각 혹은 되돌려 보내는 처리를 한다.
- 수출국의 전염병 발생 상황이 달라지거나 검역조건이 변경되면 본 검역조건은 무효이다.
- 수입을 신청한 화물이 수입 통제 제품이면 우선 먼저 심사 기관의 동의를 거쳐 수입을 할 수 있다.

○ 밀 감

- 한국에서 밀감 (Citrus unshiu)을 수입할 때 줄기(가지)나 잎에 흠이 있으면 안되며 한국정부의 식물 검역기관에서 발급한 식물검역증명서를 동봉하여야 하며 검역을 거쳐 서방 꽃 사슴벌레 (Western flower thrips ; Franklinella occidentalis) 나 화살머리 갑충 (Arrow head scale ; Unaspis yannonensis) 에 감염되지 않았음을 주석하여 밝히고 수출 전에 적당한 검역 처리를 했음을 주석하여 밝혀야 한다. 검역 증명서를 동봉하지 않을 경우 수입할 수 없으며 되돌려 보내거나 소각해야 한다.
- 밀감을 운송하는 과정에 홍콩, 마카오, 싱가포르 혹은 기타 밀감의 특정 역병 충해 발생국가나 지역을 경유하여 하역 하거나 중개 운수를 할 때는 수입시의 크고 작은 BL을 제출하여 검사를 받아야 하며 또 [운수 도중 특정 병충해의 발생지역을 경유하여 수입하는 식물 혹은 식물제품에 대한 검역 작업 방법]에 근거하여 처리해야 한다. 수출 전에 다음과 같은 포장해야 한다.
 - 완전 밀폐식 포장
 - 밀봉된 포장 상자를 포장할 때 포장 상자에 통기 구멍이 있으면 통기 구멍 위에 1.6mm보다 작은 구멍의 방충망을 덮어야 한다.
 - 나무 상자로 포장하여 운반할 때 구멍이 1.6mm보다 작은 방충망이나 완전히 해충의 침입이 불가능한 재료로 화물상자를 육면으로 밀폐하여야 한다.
 - 밀폐식 화물상자로 운반
 - 밀폐식 포장상자나 나무 상자로 운반 할 경우 밀봉한 부분이나 뜯는 곳에 수출국 식물검역기관의 봉인용지, 봉식을 붙여야 하며 운송도중에는 뜯거나 열어봐서는 안 된다. 수출국 식물 검역 기관에서 전용 봉인 용지, 봉식지를 사용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발급한 식물 검역 증명서에서 봉인 작업에 사용 되었던 봉인용지, 봉인양식 일련번호를 주석하여 밝혀야 한다. 혹은 이 봉인 용지나 봉식의 봉인 작업이 수출 전에 완성되었음을 수출 전에 밝혀야 한다.
 - 상술한 내용은 밀폐식 화물 상자로 식물이나 식물제품을 운송하여 수입하는 경우이다. 반드시 수출 식물의 검역 증명서나 선하증권(BL) 이나 기타 식물검역기관에서 심사 허가를 한 서류에 화물상자 번호 및 봉인 번호가 주석되어 있어야 한다. 화물이 수입 된 다음 검역 요원이 봉인을 뜯기 전

에 수입자나 기타 대리인이 임의로 봉인용지를 뜯거나 화물 상자를 열어서는 안 된다.

- 수입 시 만약 목재 포장재료로 적재, 포장, 기초 지탱 하는 것과 화물 고정을 할 경우 이 목재의 포장재료는 반드시 [수입 화물에 사용한 목재포장 재료 검역조건] 에 근거하여 수출 전에 브롬화 메탄으로 훈증하거나 열처리를 하여 규정에 맞는 도장을 찍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규정에 따라 검역 처리를 하거나 소각 혹은 되돌려 보내는 처리를 한다.
- 수출국의 전염병 발생 상황이 달라지거나 검역조건이 변경되면 본 검역조건은 무효이다.
- 수입을 신청한 화물이 수입 통제 제품이면 우선 먼저 심사 기관의 동의를 거쳐 수입을 할 수 있다.